[서식 예] 수표금청구 등의 소(가계수표 및 약속어음)

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⟨★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수표금청구 등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게 지급할 건축자재대금 15,000,000원의 지급수단 으로 아래 기재 (1)가계수표와 (2)약속어음 각 1매를 발행하였습니다.

(1)가계수표

금액 : 금 5,000,000원 수표번호 : 라0123456 발행일 20〇〇. 〇. 〇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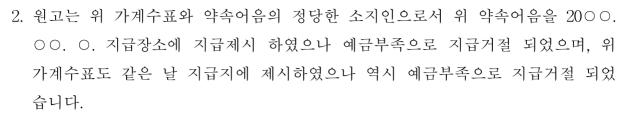
발행지 : ○○시 지급지 : ○○은행 ○○○지점

(2)약속어음

금액 : 금 10,000,000원 발행일 : 2000. 0. 0. 지급기일 : 2000. 00. 0.

발행지 및 지급지 : ○○시 지급장소 : ○○은행 ○○○지점

수취인: 원고 〇〇〇



3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가계수표의 액면 금 5,000,000원과 위 약속어음의 액면 금 10,000,000원의 합계 금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수표법 및 어음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가계수표1. 갑 제2호증약속어음1. 갑 제3호증간이영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 20○○.
 ○.
 ○.

 위 원고
 ○○○
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xxx xxx xx x
		·	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 ×
│ 제출부수 ├──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: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		
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•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•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		
	고(수표법 제29조 제1항, 제4항), 수표는 그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		
	나하면 같은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별론으로 하고 그		
	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(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		
	1922 판결).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		
기 타	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(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, 제38조 제1항), 약속어음의 소지인		
	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		
	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음을 요하지만(대법		
	원 1992. 2. 28. 선고 91다42579 판결),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		
	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		
	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(대법원 1971. 7. 20. 선고 71다1070 판결).		
	·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		
	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(수표법 제34조 제1항), 약속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		
	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		
	로(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, 제39조 제1항), 어음・수표를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・수		
	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(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60948 판결).		
	·수표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제시일 이후의 연 6%의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으며(수표법 제44조 제2호),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연 6%의		
	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(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, 제48		
	의 물에 되면 단기이후의 이사의 사람들 경기될 수 있습니습법 제 <i>11</i> 조 제1형 제4호, 제4o 조 제1항 제2호).		
	1	구이행에 과하여 어	 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
	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,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		
	라 '지급을 위하여' 또는 '지급확보를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, 채무자		
	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'은행도 어음'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		
	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		
	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, 어음이 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		
	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		
	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		
	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		
	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,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		
	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		
	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(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0다57771 판결).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

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를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- 2. 어음 ·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지급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